

「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4월 3일, 박춘희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4월 14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4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춘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우리 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한부모가족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의 준수 책무(안 제3조)
- 2)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의무(안 제4조)
- 3)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~ 제6조)
- 4)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(안 제7조)
- 5) 민간단체 등의 지원(안 제8조)
- 6) 지원의 중지 및 환수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함으로써
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○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·도비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,
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
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,

○ 관내 한부모가족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
자주적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
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검토결과,
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